



교육비전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는
빛깔 있는 학교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 <http://deukjin.es.kr>

제 2021-3호

◦교무실 : 252-0871
◦교장실 : 254-4505
◦F A X : 274-8386

학부모님께

2021학년도를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365호]에 의거하여 우리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출석 처리 방안
교외 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함. 연속 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제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등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절차-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양식1)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학부모</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담임교사 에게 신청 (3일전) </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학교장 승인 </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학부모 명예교사 위촉 </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양식2)**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중조부모, 외중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병결)- 결석계 제출 필요(양식3)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① 결석계 제출+②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 있는 결석, 만성질환 학생

① 결석계 제출+②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기타 만성질환 등)

*민감군 학생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마) 환경부로부터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① 결석계 제출+②의사의 진단서(소견서)

4)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어플 가정통신문엔 양식 탑재 ◆

2021. 3. 2.

전 주 덕 진 초 등 학 교 장